

당진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48호 2021. 07. 30.(금)

조 례

제935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936호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5
제937호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제938호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14
제939호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940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9
제941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94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규 칙

제295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5
제296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0

고 시

제2021-182호	도로명주소	55
제2021-183호	도로명주소	57

공 고

제2021-1575호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9
제2021-1628호	봉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공람공고	69

회 랑						
-----	--	--	--	--	--	--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35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당진시의회 의원”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보조 활동비”를 “보조활동비”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진시”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계산하 여”를 “계산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당진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진시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 시”를 “지급 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여비를”를 각각 “월정수당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당진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 한다.</p> <p>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한다.</p> <p>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보조활동비 ----- -----.</p> <p>② -----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 -----.</p> <p>③ ----- ----- 계산하여 -----.</p>
<p>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00천원으로 하고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p>	<p>제3조(월정수당) ① ----- ----- 시 -----</p>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달진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원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③ (생략)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지급) ① -----
----- 의
회 -----
----- 「지방자치법 시
행령」 제33조 -----
-----.
-----.

② ----- 지급 시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 제3조-----
-- 월정수당을 -----.

----- 월정수당을 -----
-----.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36호

당진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공공수역·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내 공공수역·호소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당진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조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37호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전문가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38호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당진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당진시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일몰시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39호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시내”를 “당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후보자 추천) ① (생 략)</p> <p>②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u>시내</u>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공로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피한정후견인</u> 또는 <u>피성년후견인</u>의 선고를 받은 사람</p> <p>2. ~ 5. (생 략)</p>	<p>제3조(후보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당진시</u> -----</p> <p>-----.</p> <p>-----.</p> <p>③ -----</p> <p>-----</p> <p>-----.</p> <p>1. <u>피성년후견인</u>-----</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p> <p><신 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40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당진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당진을 기반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문화”란 기억과 기록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정신적·물질적 유산과 문화를 말한다.
2. “민간기록물”이란 당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박물관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7.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영상, 문자, 음성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연구·활용, 또는 그에 필요한 사업을 통하여 당진의 기록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구입·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문화자원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기록활동가를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 ① 당진시의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

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록문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문화 관련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모전 등 각종 대회입상작 선정
4. 그 밖에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진시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록관장
2. 시립도서관장
3.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4. 공동체·마을 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사·기록·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분야의 활동 경력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41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제11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p> <p>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p> <p>3.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 -----.</p> <p>1. ----- ----- 도시공원</p> <p>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과태료) ① -----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5만원----- -----.</p> <p>② (현행과 같음)</p>

당진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조례 제94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9.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

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 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9.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제43조 (생략)

제44조 (현행 제43조와 같음)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95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기록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평가 결과 그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 수집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수집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기증 및 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당진시에 기증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위탁 신청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구입)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집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다.

1. 정치·경제·인물·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조사업무에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당진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입제안 민간기록물이 당진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중 별도의 감정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⑤ 기록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정평가인 2인 이상이

평가한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기초로 해당 기록물의 구입 가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사본수집) ① 시장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을 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채록) 시장은 구술채록 시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시민기록활동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기록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민기록활동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문화자원 및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조사·수집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보존·관리 및 기록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활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기 준	설 명	척 도				
		1	2	3	4	5
①적격성	조례 제5조(수집대상) 및 특정 주제 선정 범위에 해당 되는 정도	1	2	3	4	5
②보완성	공공기록물의 결락보완 및 기(既) 수집물과의 연계 정도	1	2	3	4	5
③진본성	내용 및 형태가 생산 당시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	1	2	3	4	5
④희소성	당진시 전체에서 희소한 정도	1	2	3	4	5
⑤최초성	당진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기록되었거나 처음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정도	1	2	3	4	5
⑥대표성	당진시를 대표할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된 정도	1	2	3	4	5
⑦정보성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하며 완결성이 있는 정도	1	2	3	4	5
⑧증명성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	1	2	3	4	5
⑨활용성	열람, 전시, 학술연구 등의 활용도	1	2	3	4	5
⑩보존성	기록물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	1	2	3	4	5
가중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	-5 ~ 5				
합산점수	최저 5점 ~ 최고 55점					

※ 적용방법 : 5분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가치를 부여

(5분척도 : 1-거의없다, 2-조금있다, 3-보통이다, 4-약간높다, 5-매우높다)

[별지 제1호서식]

민간기록물 수집카드

관리번호			작성자		
수집활동명			진행현황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종결
입수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증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구입 <input type="checkbox"/> 사본수집 <input type="checkbox"/> 구술채록				
기 록 물 정 보	유 형				
	생산 연도		수 량		
	기본정보*				
	특징정보**				
소 장 자 정 보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증예정자 <input type="checkbox"/> 잠재적 소장자(처)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기관명)		연락처		
	주 소				
	소장자 이력				
	기타 사항				
활동 상태	<input type="checkbox"/> 수집 완료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집 <input type="checkbox"/> 기증의사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집 진행사항					
일 시	접촉자	접촉유형***	접촉내용****	비 고	

*기본정보는 기록물의 내용, 분량, 보존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특징정보는 기록물의 특징적인 사항, 강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한다(최초성, 유일성 등)

***접촉유형은 전화통화, 직접방문, 이메일 교환, 기타 등 접촉 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접촉내용은 진행사항, 결정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3호서식]

민간기록물보관증

인 계 자	성 명 : (서명) 연락처 :
기록물명 (수량)	(권, 점, 건, 개)
기록물 설명	
보관기간	
보관사유	
비고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소 속
 연락처

당 진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

구 입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제안총액			
	비 고			
기록물명			유형	
생산연도			수량	(권,점,건,개)
기록물 설 명	※입수경위, 원본여부 등 포함			
<p>위 기록물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안 자 (서명 또는 인)</p>				
접수번호			접수자	

[첨부] 구입제안 기록물 목록

연번	기록물명	제안가	유형	생산연도	수량	기록물 설명	비고

[별지 제8호서식]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

조사자 성 명		작성일	
		연락처	
		이메일	
주 소			
활동기간			
조사내용			
첨부자료			

[별지 제9호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구술자	성명 : (한자:)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구술자 요구 사항		
<p>본인은 당진시에서 수행하는 구술채록에 동의하며, 본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구술자 : (서명 또는 인)</p>		
위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구술기록은 당진시의 소장자료로서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당진시는 교육·연구목적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에 위임함 	
면담자	성명 :	소속 :
구술 내용	주제 : 내용 :	

[별지 제10호서식]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

소장자	성명 : (한자:) 주소 : 연락처 :
소장자 요구 사항	
<p>본인은 당진시에 제공한 민간기록물 사본의 사용에 동의하며, 본 민간기록물 사본에 대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당진시에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장자 : (서명 또는 인)</p>	
사용 동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민간기록물 사본은 당진시의 소장자료로서 구술자의 동의하에 자료집 또는 사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전시 등의 공익적 사용에 활용될 수 있음 2. 당진시는 교육·연구목적의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음 3.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에 위임함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1년 7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96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50cm×70cm×200cm(지주형)
- 2) 재 질 : 자연속성목 등
- 3) 전용서체 : 타이틀 - 고도체 / 본문 - 고도체
- 4) 색 상 : 배경색 - C 88, M 40, Y 63, K 26
테두리 - K100
- 5) 내 용
 -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 다) 하단 : 당진시 휘장 표시

<내 용>

이 공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공원 전구역]

나. 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 2) 재 질 : 포맥스(5T), 켈지(무광코팅)
-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 5) 내 용
 -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 다) 하 단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 당진시 휘장 표시

<내 용>

이 절대보호구역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지름 31cm
- 2) 재 질 : PVC 재질 등
-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 4) 색 상 : 테두리 - C 60, M 0, Y100, K0
타이틀 - K100/레드-C0, M 100, Y 100, K 0
- 5) 내 용
 -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 나) 중 앙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 라) 테두리 : 금연구역 표시

<내 용>

이 정류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로부터 반경 10m이내]

라.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30cm×30cm
- 2) 재 질 : 스테인레스, 아크릴(3T), 배면인쇄
-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 4) 색 상 : 테두리 - C 60, M 0, Y100, K0
타이틀 - K100/레드-C0, M 100, Y 100, K 0
- 5) 내 용
 -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 다) 하 단 : 금연구역 경계(금연구역 범위) 표시 / 당진시 휘장 표시

<내 용>

이 승차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마.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 2) 재 질 : 포맥스(5T), 켈지(무광코팅)
-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 5) 내 용
 -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내 용>

이 주유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충전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1) 규 격 : 30CmX50Cm(세로형)
- 2) 재 질 : 포맥스(5T), 켈지(무광코팅)
- 3) 전용서체 : 타이틀 - 윤고딕 350 / 본문 - 윤고딕 340
- 4) 색 상 : 배경색 - 흰색, 글색 - K100 / 레드 - C 0, M 100, Y 100, K 0
- 5) 내 용
 - 가) 상 단 : 금연구역 표시
 - 나) 중 앙 : 금연로고 표시
 - 다) 하 단 : 당진시 휘장 표시

<내 용>

이 충전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흡연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표시방법

-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당진시 고시 제2021-18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3.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역천로 279-25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23.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7/23 >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정미면 대운산리 270-2	정미면 역천로 279-25	2021-07-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하천명칭 활용

당진시 고시 제2021-18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6.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구절로 65 외 15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26.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7/26 >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호려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순성면 봉소리 1111	순성면 구절로 65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면의 명산 구절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	송산면 송석리 309-2	송산면 당산1로 467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당미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고대면 술향리 827-1	고대면 보덕포로 313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보덕포 명칭 활용
4	시곡동 120-64	시곡로 345-20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5	고대면 진관리 125-7	고대면 함곡로 296-32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6	함덕읍 운산리 263-4	함덕읍 덕평로 552-2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09-08-25	함덕과 신평면의 명칭조합
7	신평면 금천리 1568-3	신평면 신평로 884-59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신평면을 지나는 도로
8	대호지면 적서리 523-7	대호지면 들개길 61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들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함덕읍 운산리 933-5	함덕읍 미학2길 5-12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미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송악읍 봉곡리 336-142	송악읍 상중말길 83-82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상중말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고대면 장항리 1040	고대면 서집들길 90-43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서집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고대면 성산리 742-2	고대면 성출재길 74-84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성출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3	송악읍 가교리 457	송악읍 소사동길 15-74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소사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4	송산면 유곡리 304-2	송산면 유두골길 72-57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유두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송악읍 오곡리 309	송악읍 천하들길 9-65	2021-07-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천하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고대면 당진포리 520-1, 521-1	고대면 은동1길 44	2021-07-26	기존건물 도로명주소 부여(리권)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은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송악읍 부곡리 187-152	송악읍 상록수길 29-5	2012-01-01	단순변경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심훈선생의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마을로 상록수 소설의 제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당진시 공고 제2021-1575호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당진시장

1. 개정이유

- 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
- 나.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인용법령의 맞춤법 정비

2. 주요내용

- 가.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근거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다. 인용법령 맞춤법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주 소 : (31773)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 : 041-350-3342 팩스번호 : 041-350-3369

E-mail : byeol24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 의무 규정 정비
- 나.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인용법령의 맞춤법 정비

2. 주요내용

- 가.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근거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다. 인용법령 맞춤법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법률 제17689호) [붙임1]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2021A충남당진085)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입법예고 (2021 ~ 2021.)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진시에 건립한 당진시립”을 “당진시립”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2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설치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방하고 적절한 치료·요양을 위하여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요양원의 위치는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383-2 일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제6조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u>당진시에 건립한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당진시립</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노인성질환”이란 「<u>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u>」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u>」 제2조-----</p>
<p>제3조(명칭 및 위치) <u>노인요양원의 명칭은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383-2 일원으로 한다.</u></p>	<p>제3조(설치 및 위치) ① <u>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요양을 위하여 당진시립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신 설></p>	<p>② <u>요양원의 위치는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383-2 일원으로 한다.</u></p>
<p>제5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p>	<p>제5조(입소대상) ----- ----- -----</p>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 둔 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 4. (생략)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위탁계약)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조(위탁운영) 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계약) ① -----

<p>관한 계약을 <u>체결하여야</u> 하며, <u>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u> 한 다.</p> <p>② · ③ (생 략)</p> <p>제13조(수탁자 의무) ① (생 략)</p> <p>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 을 「<u>노인장기요양 보험법</u>」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 다.</p> <p>③ ~ ⑥ (생 략)</p>	<p>----- <u>체결하여야</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탁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붙임1]

< 관 계 법 령 >

□ 민사소송법 (법률 제17689호)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당진085		
정책명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이별님	전화번호 041-350-33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7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표기여부 - 부 2. 성별 특성 고려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 균형 참여 보장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 통계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7월 02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임준석/041-350-3692)</div>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당진시 공고 제2021-1628호

봉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봉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당진시 산림녹지과 또는 당진2동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30.

당진시



1. 개요

- 가. 사업명 : 봉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수립
- 나. 위치 : 충남 당진시 대덕동 1881번지 일원(51,211.1㎡)
- 다. 봉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세부시설계획

공원면적 (㎡)	공원시설 (㎡)							녹지 및 기타 (㎡)
	계	기반 시설	휴양 시설	공원관리 시설	운동 시설	유희 시설	편익 시설	
51,211.1	8,164.6	2,307	107	1,314	940	2,019	1,477.6	43,046.5

2. 공람기간 : 2021. 7. 30. ~ 2021. 8. 13.까지(국·공휴일 포함 14일간)

3. 공람장소 :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 당진2동사무소(공원조성계획(변경)(안)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041-350-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